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대표 : 김진영 귀하(우 06178,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, 12층(대치동,해성1빌딩))  
(경유)

제목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[(유)한국비엠에스제약-여보이주 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]

1. 귀사에서 2020.05.18.자로 우리 처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품목 "여보이주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"(접수번호 : 20200087429 외 1건)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42조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약사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, 허가증은 우리 처 고객지원담당관 (연락처 : 043-719-1010~14, 팩스 : 043-719-1000)에서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제품명	변경항목	변경허가내용	비고
여보이주50밀리그램/10밀리리터(이필리무맙, 유전자재조합) 외 1건	원료약품 및 그 분량	-원약분량의 유효숫자 통일	여보이주200mg만 해당
	제조방법	-원료제조원(삼성바이오로직스) 추가 -완제제조원(Bristol-Myers Squibb) 추가 -제조방법 상세기재 등	-
	제조원	-원료제조원(삼성바이오로직스) 추가 -완제제조원(Bristol-Myers Squibb) 추가 등	

2. 아울러 동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불임의 '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'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증 1부(별첨)  
2. 거부처분 이의신청서. 끝.

#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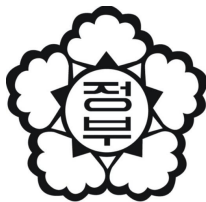


심사관 **박지혜**

보건연구관 **남주선**

전결 12.21  
담당관 **정현철**

시행 **첨 단 제 품 허 가 담 당 관** (2020.12.21)      접수 20200087429 외 1건      (2020.05.18)  
          -4157  
우 28159   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     / <http://www.mfds.go.kr>  
          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 
전화 043-719-5368      전송 043-719-5350      / jhpark1215@korea.kr      / 비공개(7)


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- 수수료: 없음

## 거부처분 이의신청서

제출서류: 없음

접수번호: 접수일: 처리기간: 10일

### 1. 신청인 정보

신청인 이름(법인명): 연락처:  
주소(소재지):

### 2. 신청 내용

이의신청 대상  
민원사항  
거부처분을 받은 날  
거부처분의 내용  
이의신청의  
취지 및 이유

### 3. 서명 및 날인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접수기관 귀하

### 처리절차



